

|     |                           |
|-----|---------------------------|
| 접 수 | 의정종합지원 -<br>(20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4년 12월 1일

청 원 인  
성 명 : 이태호 (인) 외 4 인(법인)  
주 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3-0666 (휴대전화 : )

소 개 의 원 : 이상민 (인) 외 4인

|     |      |     |     |     | 의 장 |
|-----|------|-----|-----|-----|-----|
| 담당자 | 청원담당 | 센터장 | 차 장 | 총 장 |     |
|     |      |     |     |     |     |

## 청원소개의견서

|                                                                                                                                                                                                                                                                                                                                                                                                                                                                                                                                                                                                                                                                                                                                                                                                                                       |                          |
|---------------------------------------------------------------------------------------------------------------------------------------------------------------------------------------------------------------------------------------------------------------------------------------------------------------------------------------------------------------------------------------------------------------------------------------------------------------------------------------------------------------------------------------------------------------------------------------------------------------------------------------------------------------------------------------------------------------------------------------------------------------------------------------------------------------------------------------|--------------------------|
| 청원인                                                                                                                                                                                                                                                                                                                                                                                                                                                                                                                                                                                                                                                                                                                                                                                                                                   |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
|                                                                                                                                                                                                                                                                                                                                                                                                                                                                                                                                                                                                                                                                                                                                                                                                                                       | 성명 : 이태호 외 4인            |
| 건명                                                                                                                                                                                                                                                                                                                                                                                                                                                                                                                                                                                                                                                                                                                                                                                                                                    |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청원 |
| 소개년월일                                                                                                                                                                                                                                                                                                                                                                                                                                                                                                                                                                                                                                                                                                                                                                                                                                 | 2014년 12월 1일             |
| <p>소개의견</p> <p>지난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고,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헌법에 맞게 군사법원 제도를 정상화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p> <p>군은 그동안 군의 특수성을 앞세워 군사법체제의 독립성보다 군사비밀이나 지휘관의 효율적인 지휘권 보장에 더 초점을 맞춰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사법체제가 군 인권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대 내 인권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 <p>군사법원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처럼 군사법원이 국방부의 소속인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대법원장이 관할하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관할하는 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실제 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피고인의 신분이 군인일 뿐이지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형사사건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상해치사, 성폭행을 포함한 폭행사건, 음주운전 등 이러한 일반 형사범을 일반법원이 관할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군무이탈이나 초병살해 등과 관련된 경우도 일반법원에서 다루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p> <p>이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을 일반법원에서 진행하고,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과 장교 등이 군사법원의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체제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적극 찬성하며, 이를 소개합니다.</p> |                          |

소 개 의 원

인

【별첨 1】

## 청원인 서명날인부

| 연 번 | 성 명 | 주 소                                | 날 인 | 비 고 |
|-----|-----|------------------------------------|-----|-----|
| 1   | 이태호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     |     |
| 2   | 한택근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     |     |
| 3   | 김금옥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br>센터 501호 |     |     |
| 4   | 박래균 | 서울 마포구 망원로 57 3층                   |     |     |
| 5   | 임태훈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br>센터 303호 |     |     |

【별첨 2】

##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연 번 | 의 원 명  | 날 인 | 소 속 정 당 | 소속위원회                    | 선 거 구 | 비 고 |
|-----|--------|-----|---------|--------------------------|-------|-----|
| 1   | 김광진 의원 |     | 새정치민주연합 | 국방위원회,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 비례대표  |     |
| 2   | 도종환 의원 |     | 새정치민주연합 |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 비례대표  |     |
| 3   | 서기호 의원 |     | 정의당     | 법제사법위원회                  | 비례대표  |     |
| 4   | 이상민 의원 |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대전유성구 |     |
| 5   | 진성준 의원 |     | 새정치민주연합 | 국방위원회                    | 비례대표  |     |

#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청원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 수사 및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군검찰부와 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에 대한 내용 등 군사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독립적 사법기관 또는 수사 및 공소제기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군사법제도를 전면 개혁하려는 것임.

가. 국방부 산하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을 일반법원에서 진행한다.

나.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한다.

다.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국방부장관 또는 지휘관 등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한다.

라. 군인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군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갖추되 현직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한다.

## 상세 내용

가. 사법권의 기본인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예하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화 해야 함.

- 군사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헌법 101조와 110조에 따르면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부임.
-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을 포함한 법원에 관한 부분을 "제4장 정부"와 독립된 "제5장 법원" 부분에 담고 있으며, 이는 군사법원이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하지만 현재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있음.
-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이 되는 군판사 및 심판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관할관이 임명하고, 이들의 소속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규정하고 있음(군사법원법 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24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을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으로 두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임.
- 연간 발생하는 사건규모 등을 감안하거나 사건의 성질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군 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할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으며 사법부 소속의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 현행처럼 군사법원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예하에 설치하는 한,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고 군사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지속될 것임.
- 한편,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재판부조차 구성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
- 따라서 군사법원을 폐지해 사법부에 속한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만약 군사법원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더라도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사례처럼 사법부 소속의 특별법원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 나. 지휘관의 의중에 종속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해야 함.

- 현행 군사법원법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와 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에 따르면,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하며, 심판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사령관, 사단장 등 관할관이 장교 중에서 임명함.

- 또 재판장은 선임 재판관이 되는데 통상 군판사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재판장도 군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맡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법적인 절차에 따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판의 재판장을 비법률가인 일반 장교가 맡음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오는 문제가 있음. 게다가 재판장인 일반 장교는 신분상의 독립성도 취약한데다가 지휘종속관계가 절대적인 군대의 특성상 자신을 심판관으로 임명한 상급자들의 의중에 따라 재판할 위험성이 훨씬 큼.
- 따라서 국방부 관할 하에 있어 근본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에 일반 장교를 '심판관'이라는 명목으로 임명하는 것을 폐지해야 함.

#### 다. 사법권보다 지휘관의 지휘권을 우선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해야 함.

- 현행 군사법원법 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는 재판관이 유죄 판결(집행유예 제외)을 내렸을 경우에 국방부장관 또는 책임지휘관, 즉 관할관에게 임의적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형량이 과도할 경우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아서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지휘관에게 감경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권보다 지휘권을 우선시하는 것임.
- 형량의 결정 또한 유무죄 여부의 판단과 동일하게 사법권 행사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함. 그럼에도 확인조치권을 근거로 지휘관과 법무참모가 공개법정이 아닌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형량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 물론 군대의 경우 지휘관의 지휘권은 존중되어야하고 정당한 지휘권은 보장되어야 함. 하지만 이 지휘권은 군사작전이나 군무와 관련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임. 이를 넘어서 사법권에 대해서까지 지휘관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부당함.
- 지휘관들이 이러한 권한을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군사법 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사법제도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군사법원법 379조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폐지해야 함.

#### 라. 군인 범죄를 수사하는 이들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군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 이중 군검찰관의 경우,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장교 신분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군사법원법 41조 군검찰관의 임명).
- 그러나 현직 장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인해 지휘종속관계에 취약하고 상관의 범죄를 수사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군검찰관이라는 호칭을 군검사로 바꾸고, 군검사 임용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로 넓히되, 현직 장교는 전역 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군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끝.